

종합감사

감사보고서

- 2024년 인천·대전신용보증재단 종합감사 -

2024. 6.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관실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0
II. 감사대상 기관 현황	0
1. 일반현황	0
2. 재무(수입)현황	0
III.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0
1. [인천] 법상 자격이 없는 단체에 재단 업무를 위탁	0
2. [인천] 채권 소멸시효 관리 소홀	0
3. [대전]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한 별제권 행사 누락	0
4. [인천·대전] 법원 담보공탁금 회수처리 미흡	0
5. [대전] 기보증회수보증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소홀	0
6. [인천·대전] 보증심사 및 승인 관련 처리기간 미준수	0
7. [인천·대전] 보증만료기간연장 관련 보증료 산정 부적정	0
8. [인천·대전] 구상금 분할상환 약정관리 소홀	0

9. [인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누락	0
10. [인천] 보증채무이행 관련 처리기간 미준수	0
11. [인천] 여비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하지 않아 출장비 과지급	0
12. [인천] 포상금 등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 미흡	0
13. [대전] 내부규정 미정비로 인한 퇴직금 과다지급	0
14. [대전]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0
15. [인천]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소홀	0
16. [인천·대전] 외부강의 등 신고기간 미준수	0
IV. 처분 요약	0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2024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인천·대전신용보증재단의 주기능 수행, 조직 운영·복무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주기능 수행의 투명성·공정성 및 기관운영의 효율성·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인천·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로 회계·계약·복무 등 기관운영 뿐만 아니라 기본재산, 보증 및 채권 관리 등 재단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우선 실지감사에 앞서 2024. 3. 29.부터 같은 해 4. 12.까지 서면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같은 해 4. 15.부터 5. 3.까지 14일간 감사인원 5명 내지 6명을 투입하여 관련 서류 검토와 담당자 면담 등 실지감사를 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 결과 확인된 사항과 관련하여 피감기관 등을 대상으로 질문·답변 과정을 거치는 등 의견을 수렴한 후 중소벤처기업부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24. 6. 5.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 기관 현황

1. 일반 현황

가. 설립 근거 및 주요 업무

인천 및 대전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1998년 4월과 1997년 4월에 각각 설립된 보증기관으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지역 내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으로 기본재산을 조성하여 이행 보증 등의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조직 및 인력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조직은 4부, 1실, 1센터, 1팀, 8지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4년 2월 말 기준 총 9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조직은 4부, 1팀, 4지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4년 2월 말 기준 총 57명이 근무하고 있다.

2. 재무(수입)현황

인천신용보증재단의 2023년 전체 수입액은 1,291억 원이고, 주요 수입원은 지방자치단체(인천광역시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이 364억 원(중앙정부 35억 원, 지방자치단체 121억 원, 금융기관 등 20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28.2%)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 보증료 수입, 구상채권 회수액, 재보증 보전금, 여유자금 운용이자 등이 있다.

아울러 대전신용보증재단의 2023년 전체 수입액은 1,199억 원이고, 주요 수입원은 지방자치단체(대전광역시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이 415억 원(중앙정부 21억 원, 지방자치단체 232억 원, 금융기관 등 162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34.7%)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 보증료 수입, 구상채권 회수액, 재보증 보전금, 여유자금 운용이자 등이 있다.

Ⅲ. 감사결과

Ⅲ-1

법상 자격이 없는 단체에 재단 업무를 위탁

1. 업무 개요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인천재단”이라 한다)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직유관단체로서,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라 한다)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복지 및 공정거래 지원사업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재단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르면 재단은 기본 재산의 관리, 신용보증, 경영지도, 구상권의 행사 등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3항에 따르면 재단은 그 업무의 일부를 금융회사등,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천재단은 위 기관 외에 자격이 없는 단체 등에 재단 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그런데 인천재단은 위 사업 중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금융복지 지원사업”의 경우 재단법에 따라 자체 운영하고 있는 반면, “공정거래 지원사업”의 경

우에는 인천시가 이를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한다.)에 재위탁하도록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별다른 검토 없이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위 연합회에 재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인천재단은 앞으로 범상 자격이 없는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공정거래 지원사업”이 재단법 등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수탁 기관의 법적 자격 검증을 강화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 업무 개요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인천재단”이라 한다)은 「구상권관리규정」 등에 따라 구상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등의 채권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24년 4월 감사일 기준 인천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구상채권은 총 20,536개로, 이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채권은 41개이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인천재단 「구상권관리규정」 제16조에 따르면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구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대위변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구상금청구소 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소멸시효의 중단 절차를 취하여야 하고, 중단된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어 구상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도래되었으나 구상실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추가 중단 절차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천재단은 「구상권관리규정」에 따라 구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해당 채권의 실익 여부를 검토하여, 소멸시효 중단 절차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그런데 인천재단은 위 41개 업체의 구상채권 중 35개 업체는 시효관리 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시효를 정상적으로 포기한 반면, 나머지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시효중단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의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자 의견】

C 차장 등 관련자 3명은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구상채권에 대해 검토 누락 등으로 시효가 완성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개인주의)

1. 업무 개요

대전신용보증재단(이하 “대전재단”이라 한다)은 재단에 부동산 근저당권 등 담보를 제공한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별제권을 행사(회수)하고, 행사 후 회수되지 않은 별제권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채권 확정을 신고한 다음 채권이 확정되면 법원으로부터 변제금을 입금받는다.

대전재단은 위 절차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하여 2개 업체의 별제권부 채권을 통지받았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대전재단 「개인회생절차 신청 채무관계자에 대한 업무처리기준」(이하 “업무처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면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 송달되고 인가된 경우에는 별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기준 제13조에서는 재단 채권이 미확정채권으로 반영되어 인가된 경우에는 별제권의 행사가 완료되는 즉시 채권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유보되어 있는 변제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전재단은 법원으로부터 별제권부 채권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별제권을 행사하고, 별제권 행사 후에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채권 확정을 신고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그런데 대전재단은 2개 업체의 별제권 중 1개 업체는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별제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반면, 나머지 1개 업체는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22.11.9.)되었음에도 2024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별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별제권부 채권액이 모두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 확정신고도 할 수 없게 되어 법원에 지급 유보되었던 변제금 875,760원마저 타 채권자에게 배분되는 등 같은 금액만큼 채권 회수가 곤란하게 되었다.

【관계기관 및 관계자 의견】

대전재단은 조속히 담보권 실행 절차를 진행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제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① 별제권 행사를 누락한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 담보권 실행 절차 등을 진행하고(시정요구)

② 채권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개인 주의)

1. 업무 개요

인천 및 대전신용보증재단(이하 신용보증재단은 “재단”이라 한다)은 채무불이행 등 보증사고 발생 시 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금전을 담보(담보공탁금)해 놓고 채무자의 자산(부동산 등)을 가압류한다. 이후 채무자에 대한 담보사유가 소멸되면 법원에 담보취소 결정을 신청하여 기존에 맡겨 놓은 담보공탁금을 회수한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를 결정하고 담보제공자에게 담보공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1)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재단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채권보전조치(부동산 가압류 등)를 위해 총 5,117,640,000원의 담보공탁금을 법원에 제공하였다.

인천재단은 「민사소송법」 등에 따라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법원에 담보취소를 신청하여 담보공탁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천재단은 위 담보공탁금 총 5,117,640,000원 중 4,538,090,000원은 정상 회수하거나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반면, 나머지 579,550,000원은 담보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2024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담보취소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담보공탁금 총 579,550,000원이 미회수 상태로 방치되어 인천재단 사무 등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2)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재단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채권보전조치(부동산 가압류 등)를 위해 총 1,017,420,000원의 담보공탁금을 법원에 제공하였다.

대전재단은 「민사소송법」 등에 따라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법원에 담보취소를 신청하여 담보공탁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전재단은 위 담보공탁금 총 1,017,420,000원 중 1,001,420,000원은 정상 회수하거나 담보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반면, 나머지 16,000,000원은 담보취소 사유가 발생되었음에도 2024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담보취소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담보공탁금 총 16,000,000원이 미회수 상태로 방치되어 대전재단 사무 등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인천 및 대전재단은 미회수 담보공탁금에 대해 조속히 회수 조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보공탁금 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 및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담보공탁금의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회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미회수 담보공탁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1. 업무 개요

대전신용보증재단(이하 “대전재단”이라 한다)은 보증 사고업체의 재기 지원 등을 위해, 보증 사고업체가 보증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보증받은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새로운 보증을 발생시킨 다음 기존 보증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기보증회수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전재단은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9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총 11,904건의 “기보증회수보증”을 취급하였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대전재단 「기보증회수보증 취급기준」(이하 “취급기준”이라 한다)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피보전채권으로 표시된 채권이 “기보증회수보증” 취급 등으로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다시 채권보전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전재단은 보증 사고업체의 “기보증회수보증” 취급 시 기존 보증의 채권보전조치를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하여 채권보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그런데 대전재단은 “기보증회수보증”을 취급하면서 위 11,904건 중 11,902건은 취급기준에 부합하여 처리한 반면, 나머지 2건은 기존 사고보증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하지 않아, 사고업체에 대한 기존 채권보전

조치의 법적 효력이 상실(기존 채권 소멸)되는 등의 이유로 채권 회수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관계자 의견】

P 계장 및 Q 계장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위 “기보증회수보증”건의 채권보전 조치가 누락된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 앞으로 “기보증회수보증” 취급 시 채권보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① 위 “기보증회수보증”건에 대해 근거당을 설정하는 등 채권보전조치 절차를 진행하고(시정요구)

② 채권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개인 주의)

1. 업무 개요

대전 및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신용보증재단은 “재단”이라 한다.)은 「보증취급절차에 관한 요령」에 따라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신용보증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대전 및 인천재단 「보증취급절차에 관한 요령」(이하 “보증취급요령”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르면 신용보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기업의 신용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요령 제3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신용보증신청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소액심사(통상 1억 원 이하 보증)는 7일, 표준 및 정밀심사는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증취급요령 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위 표준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 또는 휴대폰 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전자우편(E-mail) 등으로 신청기업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1)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재단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소기업·소상공인 등으로부터 총 103,272건의 신용보증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하였다.

대전재단은 신용보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표준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전재단은 신용보증승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표준·정밀심사 9건, 소액심사 8,011건에 대해 표준처리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상공인 등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a 과장 등 44명은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적시에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2)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재단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소기업·소상공인 등으로부터 총 63,089건의 신용보증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하였다.

인천재단은 신용보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표준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기한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천재단은 신용보증승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표준·정밀심사는 처리 기한(10일) 내에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 반면, 소액심사는 총 70건에 대해 처리 기한(7일)을 초과하여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위 70건 중 약 56%에 해당하는 39건을 일부 직원이 처리하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9건 중 29건(41.4%)은 D 대리가, 10건(14.3%)은 E 주임이 처리하였고, 나머지 31건은 F 주임 등 10명이 최소 1건에서 최대 8건을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롯하여 위 기한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상공인 등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D 대리 등 12명은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적시에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관계기관 및 관계자 의견】

가)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재단은 ①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접수 건수가 7.6배 폭증하여 처리가 지연됐다고 하면서 ② 보증취급요령 제31조 제1항에 의거, 3영업일을 가산 운용 적용하였을 경우 8,020건 중 1,676건이 제외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①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접수 건수가 7.6배 폭증하여 처리가 지연됐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접수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대전재단은 이를 예상하고 보증심사 및 승인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직원 등을 임시 채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타 재단 역시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접수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대전재단 대비 타 재단의 지연처리 건수가 월등히 적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접수 건수가 증가하여 수천 건에 대한 처리가 지연됐다는 대전재단의 주장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② 보증취급요령에 따라 표준처리기간에 3영업일을 가산하여 처리할 수 있고 이를 반영하면 8,020건 중 1,676건이 규정 위반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주장과 관련하여, 보증취급요령에 따라 표준처리기간에 3영업일을 가산할 경우에는 가산 일수를 전산에 반영하여 처리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하였고, 설령 3영업일 가산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6,344건을 지연하여 처리한바, 이 수치 역시 타 재단 대비 월등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전재단의 주장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인천신용보증재단

D 대리 등 관련자 12명은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보증심사 시 표준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보증심사 건수(36,540→23,694건)가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에 표준처리기간 초과 건수(1→24건)는 오히려 늘어났고, 설령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표준처리기간 내 업무를 처리한 직원이 대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관련자들의 주장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가)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보증심사 및 승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표준처리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기관주의)

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보증심사 및 승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표준처리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5건 이상 초과하여 처리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개인주의)

1. 업무 개요

인천 및 대전신용보증재단(이하 신용보증재단은 “재단”이라고 한다)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에 따라 보증만료기한 도래 시 채무자(소상공인 등)의 요청에 따라 보증만료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인천 및 대전재단 「보증료등의 운용기준」(이하 “운용기준”이라고 한다) 제6조 등에 따르면 당초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보증 건에 대해 보증만료기한을 연장할 때에도 최초 보증계약 당시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1)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재단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총 161,771건 중 149,215건의 보증에 대해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운용기준에 따르면 당초 “고정보증료율”로 계약한 보증의 만료기한을 연장할 때에는 최초계약당시 보증료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천재단은 이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인천재단은 “◎◎” 등 30개 업체의 경우 당초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경우에는 보증만료기한연장 시에도 최초계약당시 보증료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임의로 높게 적용하여 보증료를 산정·수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위 30건 중 약 50%에 해당하는 14건을 H 대리가 처리하였고 나머지 16건은 b 대리 등 9명이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채무자(소상공인 등)로부터 총 3,252,910원의 보증료를 과도하게 수납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2)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재단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총 114,732건 중 40,239건의 보증에 대해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운용기준에 따르면 당초 “고정보증료율”로 계약한 보증의 만료기한을 연장할 때에는 최초계약당시 보증료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전재단은 이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대전재단은 “◇◇” 등 5개 업체의 경우 당초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경우에는 보증만료기한연장 시에도 최초계약당시 보증료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임의로 높게 적용하여 보증료를 산정·수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채무자(소상공인 등)로부터 총 423,600원의 보증료를 과도하게 수납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인천 및 대전재단은 앞으로 운용기준에 따라 보증료를 정확히 수납함과 아울러 과도하게 수납한 보증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환급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가)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 ① 과도하게 수납된 보증료 3,252,910원에 대해 신속히 반환 처리하고(시정요구)
- ② 보증료율을 5건 이상 부당하게 적용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개인주의)

나)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과도하게 수납된 보증료 423,600원에 대해 신속히 반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1. 업무 개요

인천 및 대전신용보증재단(이하 신용보증재단은 “재단”이라 한다)은 채무자가 구상금을 분할 상환하는 경우,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 강제집행 등을 보류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인천 및 대전재단 「채무감면규정」 제9조 등에 따르면 재단은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수취 시 분할 수취(통상 8년)가 가능하고, 같은 규정 등에 따르면 채무자가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며, 이후 담보권 실행 또는 강제집행 등 구상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1)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재단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566건, 9,141,963,216원의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유지 중이다.

인천재단은 「채무감면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3개월 이상 구상금에 대한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구상권 회수를 위한 채권보전조치 등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인천재단은 위 566건(업체)의 분할상환약정 계약 중 “◆◆” 등 95건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도 3개월 이상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아 기한이익을 상실시켜야 하는데도 2024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상실시키지 아니한

채 채권보전조치(강제집행)를 보류하는 등 기한이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총 672,858,897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등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2)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재단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437건, 7,689,737,457원의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유지 중이다.

대전재단은 「채무감면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3개월 이상 구상금에 대한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구상권 회수를 위한 채권보전조치 등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대전재단은 위 437건(업체)의 분할상환약정 계약 중 “□□” 등 16건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도 3개월 이상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아 기한이익을 상실시켜야 하는데도 2024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상실시키지 아니한 채 채권보전조치(강제집행)를 보류하는 등 기한이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총 180,092,004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등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인천 및 대전재단은 앞으로 분할상환약정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채무감면규정」 등에 따라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위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히 채권보전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 및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분할상환약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채무감면규정」 등에 따라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약정금액 중 회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보전조치 등을 통해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1. 업무 개요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인천재단”이라 한다)은 구상권 채무관계자(이해관계인 포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이 진행될 경우 법무법인 등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한편, 소송이 승소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해 회수하고 있다.

인천재단은 아래 절차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총 81건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법원에 접수하였고, 이 중 40건(49.4%)이 승소하였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인천재단 「소송업무처리기준」 제24조 등에 따르면 구상금청구의 소 이외의 소송에서 재단이 승소한 경우, 「소송위임변호사운용기준」에 따라 지급된 소송위임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최종 승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천재단은 소송이 승소하여 확정된 경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법원에 신청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그런데 인천재단은 위 40건 중 24건에 대해서는 지출된 소송비용을 채무관계자로부터 정상 회수하였거나 회수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반면, 나머지 16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확정되고도 최장 1,244일이 지난 2024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소송비용액 총 13,937,369원에 대해 확정 결정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인천재단은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하면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이 누락된 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신청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소송비용액을 신청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확정 결정을 신청하여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1. 업무 개요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인천재단”라고 한다)은 「보증채무이행규정」에 따라 소상공인 등(채무자)이 금융기관(채권자)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한다.

한편, 인천재단은 채권자로부터 2019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총 20,554건의 “보증채무이행청구”를 접수하였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인천재단 「보증채무이행심사 표준처리기간기준」(이하 “처리기준”이라 한다) 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인천재단은 채권자의 보증채무이행 청구 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무이행 승인을 통지하여야 하고, 「보증채무이행규정」 제15조 등에 따르면 인천재단이 위 기간 내에 채무이행 승인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이행 지연 승인일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미수이자액(지연이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천재단은 “보증채무이행청구”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 지연이자 등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그런데 인천재단은 위 20,544건 중 20,490건은 처리기준에 따라 기한 내 처리한 반면, 나머지 54건에 대해서는 보증채무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처리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54건 중 26건(48.1%)은 I 주임이, 17건(31.5%)은

J 대리가, 나머지 11건은 K 차장 등 4명이 최소 1건에서 최대 8건에 대해 지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총 761,229원의 지연이자 불필요하게 지출되었다.

【관계자 의견】

I 주임 등 관련자 6명은 앞으로 보증채무이행 등을 지연하여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보증채무이행청구를 접수한 후 이를 지연하여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10건 이상 지연 처리한 관련자에게는 경고를, 5건 이상 10건 미만 지연 처리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개인주의·경고)

1. 업무 개요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인천재단”이라 한다.)은 자체 「여비규정」 및 「여비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총 11,397건의 근무지 내 출장 건에 대해 181,051,050원의 출장비를 지급하였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인천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직유관단체로서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하여야 하고, 집행기준에 따르면 여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 조례(「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이하 “여비조례”라고 한다)를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여비조례에 따르면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근무지 내 출장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 원을,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천재단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출장비로 1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그런데 인천재단 「여비규정」에는 근무지 내 출장은 20,000원의 출장비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출장 시간에 따른 출장비 지급기준(출장 시간: 4시간 이상 2만 원, 4시간 미만 1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출장비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되고 있을 우려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감사 기간 중 근무지 내 출장 관련 출장비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부합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총 11,397건의 근무지 내 출장 중 703건이 4시간 미만 출장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각 10,000원의 출장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703건 모두 각 20,000원의 출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총 7,030,000원의 출장비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지급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인천재단은 여비 관련 내부규정을 개정하여 앞으로 출장비 등 여비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춰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등에 따라 근무지 내 4시간 미만 출장 시 1만 원의 출장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여비 관련 내부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1. 업무 개요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인천재단”이라 한다.)은 「직원상벌규정」 등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62명(임직원 122명, 소상공인 40명)에게 기관장 표창 등을 수여하고, 이들에게 총 24,900,000원의 포상금(온누리상품권)을 부상으로 지급하였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등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기타소득(상금·사례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8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등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천재단은 「소득세법」에 따라 임직원 등에게 기타소득 명목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 후 그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관할 세무서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그런데 인천재단은 위 162명 중 156명은 포상금 25만 원 이하로 소득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과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한 반면, 나머지 6명은 소득과세 대상에 포함되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인천재단은 앞으로 포상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포상금 등 기타소득에 대해 관할 세무서 등에 수정신고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 업무 개요

대전신용보증재단(이하 “대전재단”라 한다.)은 자체 「보수규정」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h 계장 등 총 18명의 임직원에게 “퇴직월급여”(이하 “퇴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대전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직유관단체로서 예산 운영의 건전성·효율성을 위해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시 예산 편성방침」(이하 “예산편성방침”이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예산편성방침에 따르면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하 “보수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임용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 월에 15일 이상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월액의 전부를 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따라서 대전재단은 위 조건(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 월에 15일 이상 근무)이 충족하는 경우 외에는 퇴직 월에 실제 근무한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그런데 대전재단 「보수규정」에는 채용, 퇴직, 복직 등 기타 어떠한 경우에서도 모두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급여를 일할계산한다고 하면서도, 그 단서에는 퇴직한 때에는 그달의 월 급여를 전액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퇴직금 관

런 규정이 충돌하고 있어 퇴직금이 보수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지급되고 있을 우려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감사 기간 중 퇴직금이 상위규정에 부합하게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위 18명 중 5명은 보수지침에 부합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반면, 나머지 13명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 시 퇴직 월에 실제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일수까지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총 19,866,020원의 퇴직금이 보수지침 등 상위규정 부합하지 않게 지급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대전재단은 보수 관련 내부규정을 개정하여 앞으로 퇴직금 지급 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부합하여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퇴직금 지급 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에 부합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1. 업무 개요

대전신용보증재단(이하 “대전재단”라 한다.)은 「인사규정」 및 「계약직원 운영 기준」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정규직 33명, 기간제근로자 64명 등 총 97명의 직원을 채용하였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4년도 출자·출연기관 기준 3.8%)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전재단은 24년도 기준 최소 2명(대전재단 상시근로인원 64명 × 3.8%)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그런데 대전재단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총 97명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대전재단은 앞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준수하여 장애인을 채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별도전형 및 특별채용을 실시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 업무 개요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인천재단”이라 한다)은 자체 「여비규정」 및 「공무국외여행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총 17명(중복인원 포함)이 공무여행을 수행하였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인천재단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하여야 하고, 집행기준에 따르면 여비집행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 조례(「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이하 “여비조례”라고 한다)를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여비조례에 따르면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기준」(이하 “처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내와 국외를 포함하여 공무여행에 의해 발생하는 마일리지(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라 한다)를 전산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천재단 임직원은 처리기준 등에 따라 공무여행을 수행하고 개인별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전산에 등록하여 이를 차후 공무여행에 사용하여야 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그런데 인천재단은 「여비규정」에 국외 공무여행과 달리 국내 공무여행의 경우 항공마일지를 적립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제대로 적립 및

등록(전산)하고 있지 않을 우려가 있었다.

이에 2019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발생한 국외 및 국내 공무여행 전반을 확인한 결과, 인천재단 內 공무여행 수행자 총 17명 중 X 센터장 등 5명은 국외 공무여행을 수행하고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정상적으로 등록한 반면, A 차장 등 12명(중복 1명 포함)은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및 국외 공무여행을 수행하고도 항공마일리지를 적립 또는 등록하지 않는 등 공적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W 대리 등 5명은 국내(제주도) 공무여행을 수행하고서도 공적 항공마일리지(2,208마일)를 전산에 등록하지 않는가 하면, A 차장 등 7명은 국외(스리랑카 등) 공무여행을 목적으로 항공권을 발권하면서도 항공사 회원가입 없이 발권하여 항공마일리지(총 60,982마일) 자체가 적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인천재단은 항공마일리지 관련 규정을 개정(국내 포함)하고, 앞으로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등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①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개선을 위해 미등록 항공마일리지를 전산에 등록하고, 항공마일리지 적립·등록에 대한 임직원 인식 제고 등 방안을 마련하며(통보)

② 국내 공무여행 시에도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1. 업무 개요

인천 및 대전신용보증재단(이하 신용보증재단은 “재단”이라 한다)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임직원의 외부강의 신고 등에 대한 복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대전신용보증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및 「인천신용보증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19조 등에 따르면 임직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이사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부강의 등 신고서” 서식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1)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재단 임직원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총 25개 기관에서 49회(20명)에 걸쳐 외부강의 등을 수행하고 사례금으로 계 9,196,800원을 수령하였다.

인천재단 행동강령 등에 따르면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청인·요청사유·장소 및 대가 등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누락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M 본부장 등 4명은 위 기간 동안 총 14회에 걸쳐 외부강의 등을 하

고서도 6회에 걸쳐 그 사실을 지연하여 신고하는 등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외부강의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재단 임직원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총 47개 기관에서 272회(26명)에 걸쳐 외부강의 등을 하고 사례금으로 계 64,380,000원을 수령하였다.

대전재단 행동강령 등에 따르면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청인·요청사유·장소 및 대가 등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누락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R 본부장 등 7명은 위 기간 동안 총 86회의 외부강의 등을 하고서도 22회에 걸쳐 그 사실을 지연하여 신고하는 등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외부강의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자 의견】

M 본부장 및 R 본부장 등 관련자 9명은 앞으로 외부강의 등을 수행한 후 신고를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 및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외부강의 등을 수행한 후 신고를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외부강의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개인주의)

IV. 처분 요약

1. 인천신용보증재단

□ 처분요구: 주의·경고 14건(개인 14), 개선 2건, 통보 3건, 시정 4건

구분	건명	관계부서	처분요구		조치 기한
			기관	개인	
1	법상 자격이 없는 단체에 재단 사무를 부당하게 위탁		통보	-	'24.8월
2	채권 소멸시효 관리 소홀		-	주의(3명)	'24.8월
3	법원 담보공탁금 회수처리 미흡		시정	-	'24.8월
4	보증심사 및 승인 관련 처리기간 미준수		-	주의(4명)	'24.8월
5	보증만료기간연장 관련 보증료 산정 부적정		시정	주의(1명)	'24.8월
6	구상금 분할상환 약정관리 소홀		시정	-	'24.8월
7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누락		시정	-	'24.8월
8	보증채무이행 관련 처리기간 미준수		-	경고(2명) 주의(1명)	'24.8월
9	여비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하지 않아 출장비 과지급		개선	-	'24.8월
10	포상금 등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 미흡		통보	-	'24.8월
11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소홀		통보·개선	-	'24.8월
12	외부강의 등 신고기간 미준수		-	주의(3명)	'24.8월

□ 신분상 조치: 주의 14명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처분계획			행위
				주의	경고	징계	
1			A	○			채권 소멸시효 관리 소홀
2			B	○			
3			C	○			
4			D	○			보증심사 관련 처리기간 미준수
5			E	○			
6			F	○			
7			G	○			보증연장 관련 보증료 산정 부적정
8			H	○			
9			I		○		보증채무이행 처리기간 미준수
10			J		○		
11			K	○			
12			L	○			외부강의 등 신고기간 미준수
13			M	○			
14			N	○			

2. 대전신용보증재단

□ 처분요구: 주의 10건(개인 9, 기관 1), 개선 1건, 통보 1건, 시정 5건

구분	건명	관계부서	처분요구		조치 기한
			기관	개인	
1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한 별제권 행사 누락		시정	주의(1명)	'24.8월
2	법원 담보공탁금 회수처리 미흡		시정	-	'24.8월
3	기보증회수보증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소홀		시정	주의(2명)	'24.8월
4	보증심사 및 승인 관련 처리기간 미준수		주의	-	'24.8월
5	보증만료기간연장 관련 보증료 산정 부적정		시정	-	'24.8월
6	구상금 분할상환 약정관리 소홀		시정	-	'24.8월
7	내부규정 미정비로 인한 퇴직금 과다지급		개선	-	'24.8월
8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통보	-	'24.8월
9	외부강의 등 신고기간 미준수		-	주의(6명)	'24.8월

□ 신분상 조치: 주의 9명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처분계획			행위
				주의	경고	징계	
1			O	○			개인회생 관련 별제권 행사 누락
2			P	○			기보증회수보증 채권보전조치 소홀
3			Q	○			
4			R	○			
5			S	○			외부강의 등 신고기간 미준수
6			T	○			
7			O	○			
8			U	○			
9			V	○			